

기계설비 기술기준 그림 해설

[제1장] 총칙

제1조(목적)

- 기계설비 안전 및 성능확보
- 착공 전 확인/사용 전 검사 필요 사항 규정

제2조(정의)

- “기계설비설계자”란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6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사업자,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2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, 「기술사법」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 또는 「건축사법」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등에 소속되어 기계설비공사의 설계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기계설비시공자”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을 등록하고 기계설비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”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2조제8호,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2조제5호, 「건축법」 제2조제15호, 「주택법」 제43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와 관련된 건설사업관리 및 감리업무 등을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.
- “현장배치기계설비기술인”이란 「건설산업기본법」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**현장에 배치된** 건설기술인을 말한다.
- “현장배치기계설비감리인”이란 「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」 제60조에 따라 기계설비공사 **현장에 배치되어** 제5호에 따른 기계설비공사의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인, 「건축법」 제25조에 따른 공사감리자 또는 「주택법」 제43조에 따른 감리자를 말한다.

제3조(적용범위)

제4조(기술기준의 준수)

- 기계설비설계자
- 기계설비시공자
-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

그 외

- 발주자
- 시장, 군수, 구청장

제5조(다른 규정과의 관계)

[제2장]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(1/2) 제1절 일반사항

제6조(기계설비 설계의 일반원칙)

- 시공, 감리, 유지관리 등 전 과정 합리적 설계
- 공정관리 지장없고, 하자 책임 구분 용이하도록 타 분야의 공종 구분하여 설계
- 에너지 절약, 환경친화적 설비 우선 사용 검토
-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 가능 여부 검토

제7조(기계설비 시공의 일반원칙)

- 공정표, 시공계획서 등 준수
- 설계도서 등을 충실히 검토, 현장 여건에 맞는 시공계획 수립
- 기능 발휘 위해 설계도서, 시공상세도 등에 적합하게 시공

제8조(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 기준)

- 음원설비 및 냉난방설비 : 별표 1
- 공기조화설비 : 별표 2
- 환기설비 : 별표 3
- 위생기구설비 : 별표 4
- 급수·급탕설비 : 별표 5
- 오배수·통기 및 우수배수설비 : 별표 6
- 오수정화·물재이용설비 : 별표 7
- 배관설비 : 별표 8
- 덕트설비 : 별표 9
- 보온설비 : 별표 10
- 자동제어설비 : 별표 11
- 방음·방진·내진설비 : 별표 12
- 플랜트설비 : 별표 13
- 특수설비 : 별표 14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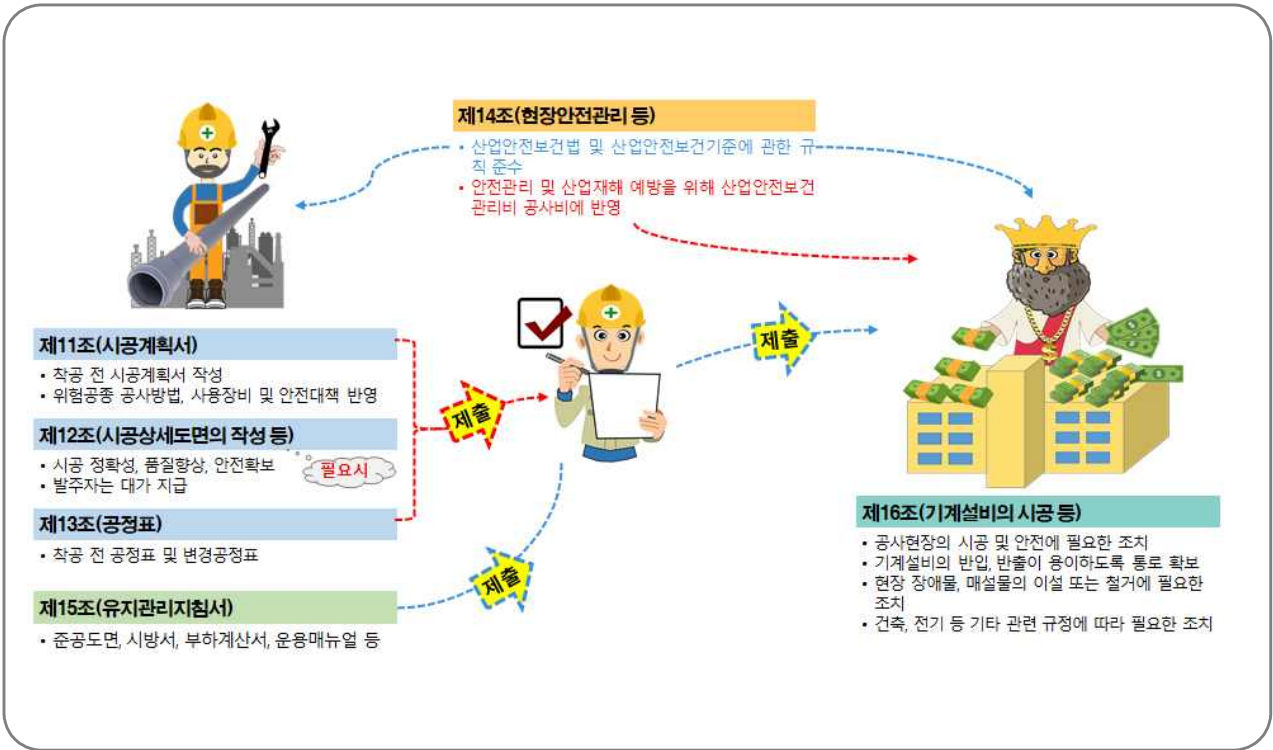
제9조(유지관리를 고려한 설계 및 시공)

- 장비, 배관, 덕트 및 각종 부속품 유지관리 용이
- 유지관리비용 분담, 개별제어 또는 통합제어 등이 가능할 것
- 점검구 등 기계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최소한 공간 확보: **별표 15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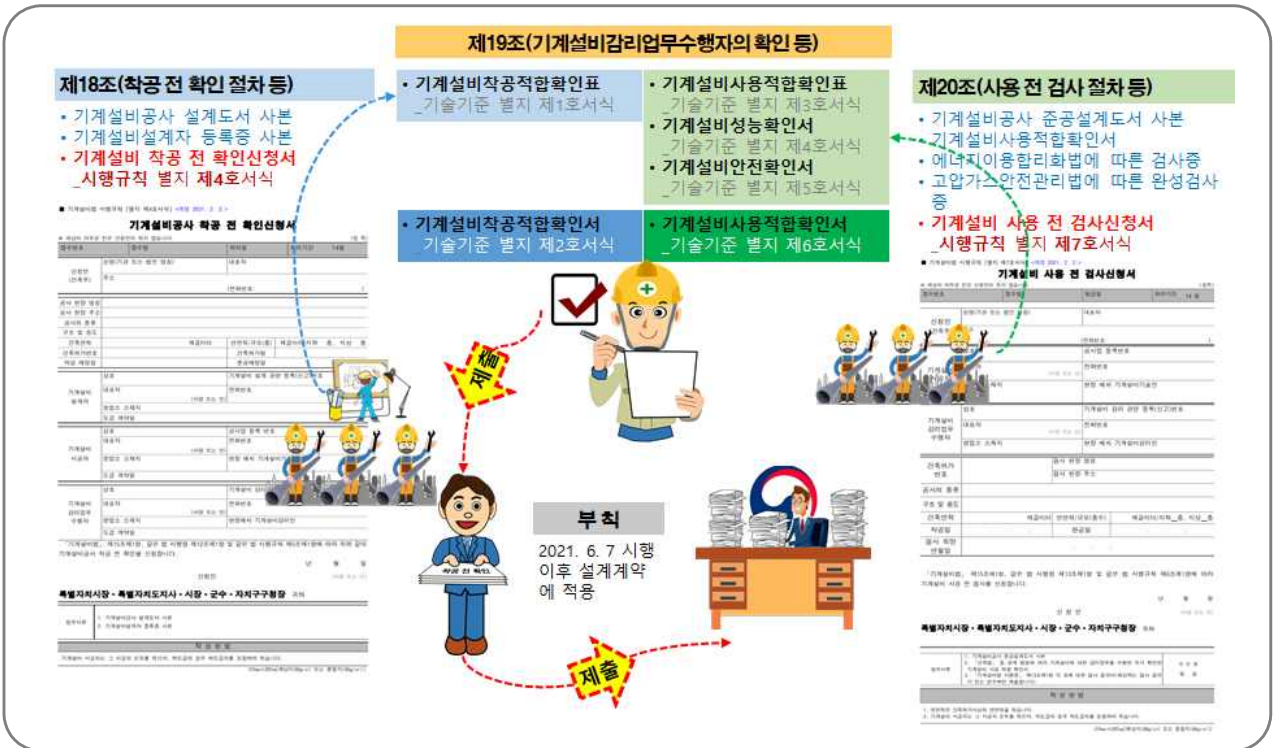
제10조(기계설비 설계대가 적용 등)

- 발주자 : 「건설기술 진흥법」 제37조 또는 「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」 제31조에 따른 적정대가 지급
- 하도급의 경우 : 「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」 제4조 준수

[제2장]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기준(2/2) 제2절 세부사항



[제3장]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(1/2)



[제3장] 기계설비의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(2/2)

제17조(대상 건축물등의 확인)

- 연면적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4호에 따른 연면적
- 바닥면적 : 「건축법 시행령」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



기계설비법 시행령 [별표 5]

- 중도별 건축물 중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
- 에너지 대량소비 건축물
 - 아파트 및 연립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
 - 바닥면적 합계 5백제곱미터 이상 건축물
 - : 방통/방장/항온항습 or 특수정장
 - 목욕장, 놀이형시설(실내놀이기구)
 - 바닥면적 합계 2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
 - : 기술사, 의료시설, 유스호스텔, 숙박시설
 - **바닥면적 합계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**
 - : 판매시설, 연구소, 업무시설
- 지하역사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 지하도 상가

제21조(업무매뉴얼 제작 및 배포)

- 목적 : 착공 전 확인과 사용 전 검사 업무의 효율적인 집행과 관계 행정기관 및 이해당사자 간의 민원 해소



[제4장] 보칙 및 부칙

보칙

제22조(기술기준의 관리 등)

- 고시의 개정/폐지 시 관계 중앙행정기관,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기계설비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야 함
- 전문성이 요구되는 시험·조사·연구가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**전문연구기관 등에 의뢰 가능**

제23조(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특례)

- 신기술·신공법 도입 필요, 공사의 특성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이 고시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기계설비 설계·시공기준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**발주자와 기계설비감리업무수행자가 협의하여** 이 고시의 일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

제23조(기계설비 기술기준에 대한 특례)

- 2021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**매 3년**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 조치 해야 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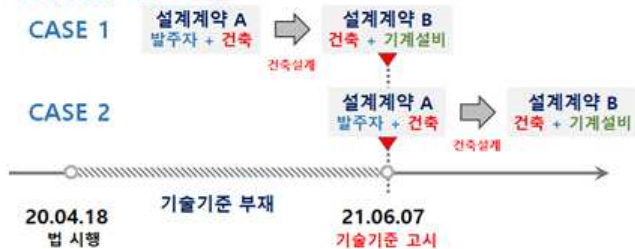
부칙

제1조(시행일)

- 발령일부터 시행

제2조(기계설비 설계 및 시공 기준에 관한 적용례)

- 제2장에 따른 기계설비의 설계 및 시공에 관한 기준은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
- **CASE 2를 기준으로 함**



제3조(기계설비 착공 전 확인 등에 관한 적용례)

-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는 이 고시 시행 이후 설계계약을 체결하는 기계설비공사부터 적용한다.